

2021 - 218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(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(예정)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5월 6일
서울특별시 장

1. (도시정비형)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: 1개 구역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 제1항 제6호

구역해제 현황

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: 정비예정구역 해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정비수법	비고
기정	강북2재정비촉진구역	강북구 미아동 42-8일대	18,958	전면철거형	미아사거리 북측 미아지역중심
변경	해 제				

☐ 정비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구역의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·감	변경	
변경	강북2재정비촉진구역 (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)	강북구 미아동 42-8일대	18,958	감) 18,958	-	

☐ 정비계획 변경(환원 및 폐지)

- 용도지역·지구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○ 토지이용계획(폐지)

결정구분	구 분	명 칭	면 적 (㎡)	비 율(%)	비 고
기정	합 계		18,958.0	100.0	
	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3,573.5	18.8	
		도 로	2,907.3	15.3	
		공 원	666.2	3.5	
	획지	소 계	15,384.5	81.2	
		획 지	15,384.5	81.2	
변경	폐지(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)				

○ 건축시설계획(폐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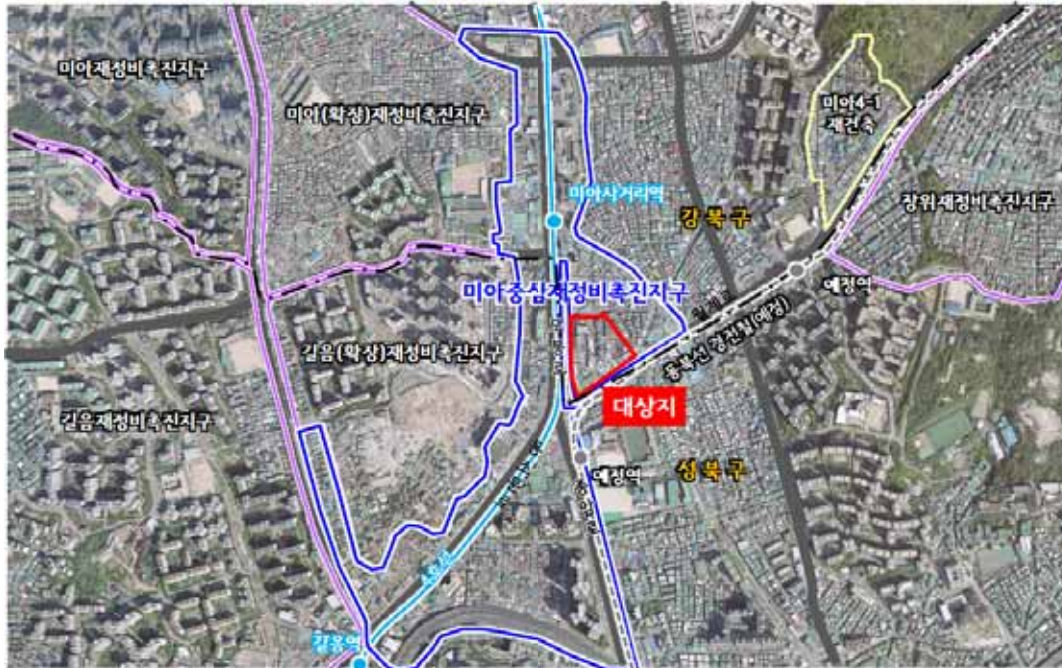
구분	면적(㎡)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주된 용도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최고층수 (지하/지 상)
		명칭	면적(㎡)					
기정	18,958.0	택지	15,384.5	문화, 판매, 업무, 주거	189,446 이하	60 이하	기준:430이하 허용:600이하 상한:698.08이하	150이하 (7/43)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	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(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.

2. 위치도 및 지형도면: 붙임과 같음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(☎2133-7227)와 강북구 도시계획과(☎901-685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○ 위치도



○ 정비구역 해제 결정도

